

	실병관리청	보	도 침	밝 고	사 료
배 포 일 2020. 11. 15. (총 23매)			담당.	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팀 장	홍 정	익	전	화	043-719-9370
담 당 자	진 여 원,	겐	왁	043-719-936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1월 15일)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1월 1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76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8,546명(해외유입 4,136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5명으로 총 25,691명(90.00%)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2,36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6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93명(치명률 1.73%)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1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쏂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6																	
누계	24,410	6,232	547	7,110	961	483	414	120	66	5,163	362	164	621	124	190	1,522	289	42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1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추정)유입국가 <sup>*</sup>						확인 단계		국적	
구분			아시아 ( <del>중</del> 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32	0	16	6	10	0	0	18	14	22	10
누계	4.136	27	2,047	752	1,175	117	18	1,938	2,198	2,285	1,851
74	4, 130	(0.7%)	(49.5%)	(18.2%)	(28.4%)	(2.8%)	(0.4%)	(46.9%)	(53.1%)	(55.2%)	(44.8%)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1명), 인도 1명, 쿠웨이트 1명, 우즈베키스탄 5명(3명), 방글라데시 1명(1명), 러시아 7명(2명), 유럽 : 독일 2명(1명), 폴란드 2명, 프랑스 1명(1명), 헝가리 1명, 아메리카 : 미국 8명(1명), 멕시코 2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1.14.(토) 0시 기준	25,636	2,210	54	492
11.15.(일) 0시 기준	25,691	2,362	56	493
변동	(+)55	(+)152	(+)2	(+)1

<sup>\* 11</sup>월 14일 0시부터 11월 1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sup>\*\*</sup>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11월 15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참조
  -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와 관련하여 격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5명이다.

구분	계	<b>이용자</b> (지표환자 포함)	종사자	방문자	가족 및 지인 등
전일	59	31	13	1	14
금일	65(+6)	31	14(+1)	1	19(+5)

- 서울 용산구 국군복지단과 관련하여 11월 12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 \* (구분) 군무원(지표환자 포함) 6명, 군인 5명, 가족 7명(+4), 기타\*\* 1명(+1)
  - \*\* **(기타)** 종교활동 접촉자
- 서울 강남구 역삼역과 관련하여 11월 12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1명이다.

구분	계	강남구 역삼역 관련	성동구 시장 관련*					
TE	<b>7</b> 11	(지표환자 포함)	시장 관련	지인 등	가족			
11.12일	22	3	7	3	9			
금일	31(+9)	3	11(+4)	3	14(+5)			

\* (추정감염경로) 지표환자 지인의 근무지인 성동구 시장과 가족으로 추가 전파









○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과 관련하여 11월 13일 이후 격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9명이다.

구분	계	간병인 및 직원	환자 및 이용자	가족 및 지인
안양시 일가족	4	-	-	4
남천병원	24	3	11	10
어르신세상주간보호센터	34	8	13	13
오산메디컬재활요양병원	43	9	34	-
아이사랑어린이집 관련	19(+1)	2	3(+1)	14
금호노인요양원	35(+4)	9(+2)	23(+2)	3
계	159(+5)	31(+2)	84(+3)	44

- **강원 철원군 장애인 요양원**과 관련하여 11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 \* (구분) 종사자 1명(지표환자), 이용자 3명, 지표환자 지인 2명 / 종사자 및 입소자 209명 검사 중
- **강원 인제군 지인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9명이**다.

		지인모임 -	추가전파					
구분	계	계 <b>모임 참석자</b> (지표환자 포함)		동료	종교활동 관련	지인	기타 <sup>*</sup>	
전일	21	6	6	1	5	1	2	
금일	29(+8)	6	6	1	8(+3)	5(+4)	3(+1)	

- \* (기타) 모임참석자 가족이 방문한 식당 관련 접촉자
- \*\* (지역) 강원 26명, 경기 1명, 대전 1명, 서울 1명
- **강원 교장연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10월 13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연수프로	그램 관련	추가 전파		
구분	계	<b>참석자</b> (지표환자 포함)	가족	지인	기타 <sup>*</sup>	
11.13일	7	6	1	-	-	
금일	16(+9)	6	3(+2)	4(+4)	3(+3)	

\* (기타) 가족의 접촉자 및 가족 접촉자의 동료









- 충남 서산 군부대와 관련하여 11월 1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 (**구분**) 강사 1명(지표환자), 군부대 7명, 강사의 가족 1명
- 충남 아산 직장과 관련하여 11월 8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9명이다.

78	계	계	직장동료		주점 관련	İ	L 30 HF	사유	2나 관련
구분	<u> </u>	(지표환자 포함)	장 종사자 방문자	방문자	추가전파	노래방	이용객	추가전파	
11.8일	35	8	3	5	5	1	8	5	
금일	49(+14)	10(+2)	3	5	6(+1)	1	8	16(+11)	

- \* (지역) 충남 38명, 서울 4명, 경기 4명, 경북 3명
- **광주 소재 대학병원**과 관련하여 11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 \* (구분) 의료진 5명(지표환자 포함), 의료진 가족 1명, 환자 1명, 보호자 1명
- 전남 광양시 소재 기업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 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구분	계	<b>가족</b> (지표환자 포함)	가족의 직장	쇼핑몰	기타
전일	19	8	7	2	2
금일	25(+6)	11(+3)	7	3(+1)	4(+2)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3.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및 처분 기준
- 4. 마스크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
- 5.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리플릿
- 6.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식약처)
- 7.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 8.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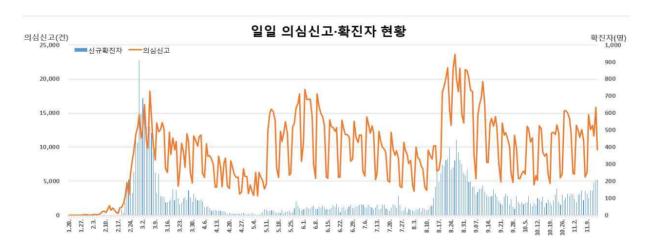


#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① **일일 확진자 현황** (11.15. 0시 기준, 28,546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sup>**</sup>		결과 역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ТЕ	<b>5</b> 71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급시 중	크뉴 무있					
11.14.(토) 0시 기준	2,777,289	28,338	25,636	2,210	492	34,692	2,714,259				
11.15.(일) 0시 기준	2,786,878	28,546	25,691	2,362	493	36,378	2,721,954				
변동	+9,589	+208	+55	+152	(+)1	+1,686	+7,695				

- \* 11월 14일 0시부터 11월 1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0,000 일일 누적 격리중·격리 해제자 현황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









# ② **지역별 확진자 현황** (11.15. 0시 기준, 28,546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TICH	금일	신규	하지만나게	(0/)	인구10만명당			
지역	국내발생	해외유입	확진자누계	(%)	발생률 <sup>*</sup>			
서울	81	4	6,733	(23.59)	69.17			
부산	0	0	612	(2.14)	17.94			
대구	0	1	7,203	(25.23)	295.63			
인천	2	0	1,080	(3.78)	36.53			
광주	7	2	556	(1.95)	38.17			
대전	0	0	450	(1.58)	30.53			
울산	0	0	167	(0.59)	14.56			
세종	0	0	84	(0.29)	24.54			
경기	41	4	5,956	(20.86)	44.95			
강원	19	0	394	(1.38)	25.58			
충북	8	0	215	(0.75)	13.44			
충남	5	0	698	(2.45)	32.89			
전북	0	2	178	(0.62)	9.79			
전남	8	1	238	(0.83)	12.76			
경북	2	0	1,598	(5.60)	60.02			
경남	3	0	384	(1.35)	11.42			
제주	0	0	62	(0.22)	9.24			
검역	0	18	1,938	(6.79)	-			
총합계	176	32	28,546	(100)	55.06			

<sup>\*</sup>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	지역	별 2	격리	중,	격리	해제	, 사	망자	현	<b>황*</b> (1	.3일	이후	누계	) >			
구 분	합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검 역
격리 중	2,362	778	30	38	34	43	11	4	2	569	117	28	152	14	54	10	67	3	408
격리해제	25,691	5,874	567	6,969	1,035	510	433	161	82	5,283	273	184	538	163	182	1,531	317	59	1,530
사망	493	81	15	196	11	3	6	2	0	104	4	3	8	1	2	57	0	0	0
합 계	28,546	6733	612	7,203	1,080	556	450	167	84	5,956	394	215	698	178	238	1,598	384	62	1,938

<sup>\* 11</sup>월 14일 0시부터 11월 1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sup>※</sup>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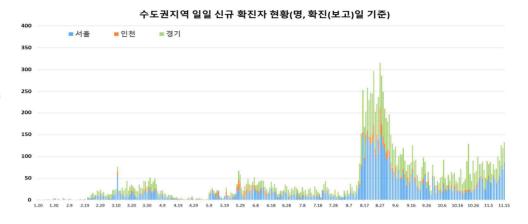


<sup>\*\*</sup>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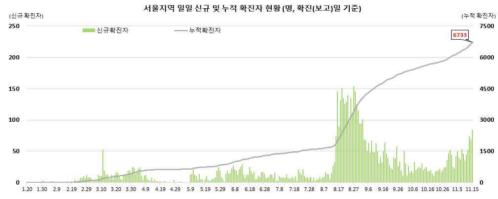


###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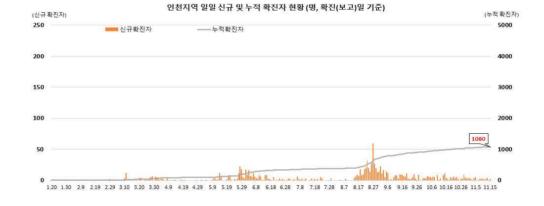
##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신규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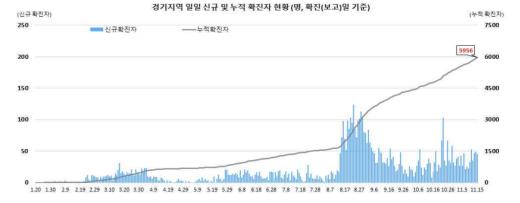
### 서울지역 확진자 현황



### 인천지역 확진자 현황



## 경기지역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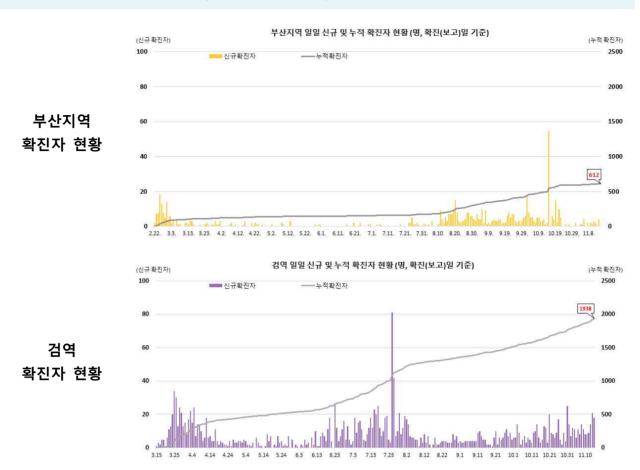








### <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 ③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11.15. 0시 기준, 28,546명)

	<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						
7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208	(100)	28,546	(100)	55.06	
성별	남성	100	(48.08)	13,381	(46.88)	51.74	
O Z	여성	108	(51.92)	15,165	(53.12)	58.36	
	80세 이상	5	(2.40)	1,246	(4.36)	65.61	
	70-79	13	(6.25)	2,282	(7.99)	63.26	
	60-69	40	(19.23)	4,516	(15.82)	71.18	
	50-59	49	(23.56)	5,222	(18.29)	60.25	
연령	40-49	27	(12.98)	3,861	(13.53)	46.02	
	30-39	27	(12.98)	3,597	(12.60)	51.06	
	20-29	26	(12.50)	5,473	(19.17)	80.41	
	10-19	13	(6.25)	1,581	(5.54)	32.00	
	0-9	8	(3.85)	768	(2.69)	18.51	

<sup>\*</sup>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4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1.15.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						
7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1	(100)	493	(100)	1.73	
 성별	남성	0	(0.00)	260	(52.74)	1.94	
0 Z	여성	1	(100)	233	(47.26)	1.54	
	80세 이상	1	(100)	250	(50.71)	20.06	
	70-79	0	(0.00)	157	(31.85)	6.88	
	60-69	0	(0.00)	57	(11.56)	1.26	
	50-59	0	(0.00)	23	(4.67)	0.44	
연령	40-49	0	(0.00)	4	(0.81)	0.10	
	30-39	0	(0.00)	2	(0.41)	0.06	
	20-29	0	(0.00)	0	(0.00)	0.00	
	10-19	0	(0.00)	0	(0.00)	0.00	
	0-9	0	(0.00)	0	(0.00)	0.00	

<sup>\*</sup>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sup>※</sup>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sup>※</sup>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 일별 사망자 현황 >



# < 위중증 현황 >

구분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계 49 52 53 51 50 53 58 57 54 49 53 50 54 56

구분	위중증	(	%	)
<b>"</b>	56	(	100.0	)
80세 이상	11	(	19.6	)
70-79세	27	(	48.2	)
60-69세	14	(	25.0	)
50-59세	3	(	5.4	)
40-49세	1	(	1.8	)
30-39세	0	(	0.0	)
20-29세	0	(	0.0	)
10-19세	0	(	0.0	)
0-9세	0	(	0.0	)

<sup>\*</sup>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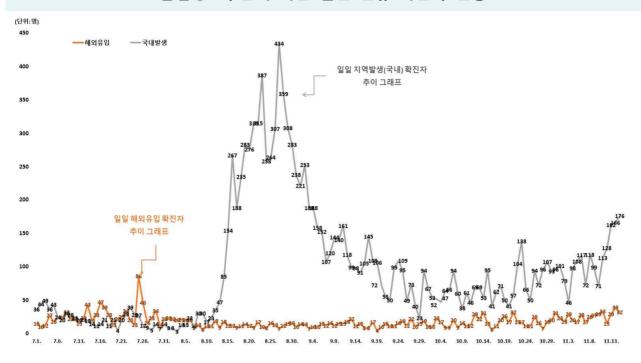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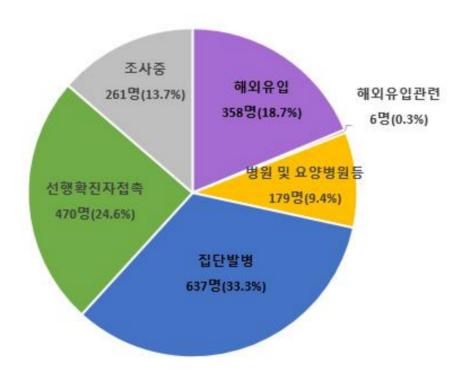


### **⑤ 감염경로**

### <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 최근 2주간 (11.2일 0시~11.15일 0시까지 신고된 1,911명) 감염경로 구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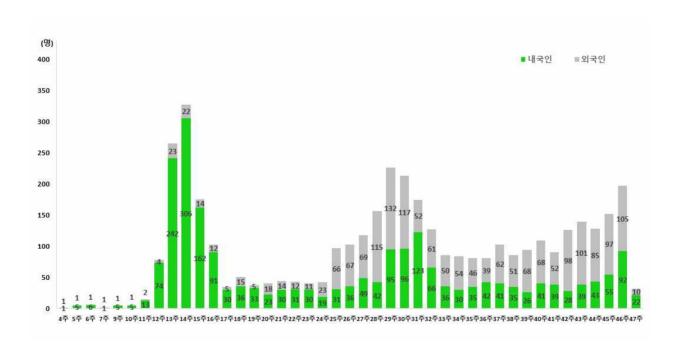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역학조사 결과 유입국가 변경(11.12.0시 기준 3건; 아프리카(이집트) → 아시아(중국 외)(러시아))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 구요 십단 일생 연왕 >									
			:		<b>ŀ</b> (단위: 5	병, %)			1	
지역	누계	해외 유입	소계	<b>집단발</b> 신천지 관련	<b>생 관련</b> 집단 발병	해외유입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서울	6,733	501	3,679	8	3,594	77	1,346	1,207	85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부산	612	65	428	12	361	55	61	58	0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b>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b>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대구	7,203	93	5,420	4,512	904	4	936	754	1	• <b>클럽 관련(277명)</b>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인천	1,080	119	706	2	695	9	136	119	2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광주	556	73	402	9	387	6	47	34	9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대전	450	36	274	2	272	0	88	52	0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b>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b>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울산	167	47	84	16	64	4	21	15	0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세종	84	18	52	1	50	1	10	4	0	•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경기	5,956	793	3,474	29	3,377	68	949	740	45	•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 관련(157명) * 경기 111명, 서울 46명
강원	394	32	242	17	224	1	72	48	19	•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 관련(63명) * 서울 60명, 경기 3명 • 충남 아산 직장 관련(49명)
충북	215	51	94	6	81	7	46	24	8	* 충남 37명, 경기 6명, 서울 6명 • <b>강원 인제군 지인모임 관련(23명)</b>
충남	698	77	419	0	418	1	120	82	5	* 강원 17명, 경기 5명, 대전 1명 • <b>서울 동작구 카페 관련(19명)</b> * 서울 10명, 경기 6명, 인천 3명
전북	178	54	78	1	77	0	29	17	2	• 충남 서산 군부대 관련(11명) * 충남 7명, 경기 3명, 세종 1명
전남	238	48	126	1	123	2	48	16	9	• <b>광주 소재 대학병원 관련(2명)</b> • 광주 2명
경북	1,598	76	1,178	565	613	0	202	142	2	<ul> <li>수도권 중학교/헬스장 관련(81명)</li> <li>* 서울 55명, 경기 22명, 광주 2명 등</li> <li>충남 천안 신부동 콜센터 관련(38명)</li> </ul>
경남	384	95	240	32	205	3	23	26	3	* 충남 36명, 경기 1명, 서울 1명  • 서울 강남구 역삼역 관련(24명)  * 서울 20명, 경기 3명, 경남 1명
제주	62	20	15	0	14	1	20	7	0	• 경기 가평군 보습학원 관련(19명) * 경기 18명, 강원 1명
검역	1,938	1,938	0	0	0	0	0	0	18	<ul> <li>서울 용산구 국군복지단 관련(17명)</li> <li>서울 13명, 경기 4명</li> <li>경기 용인시 출장서비스업 직장 모임 관련(13명)</li> </ul>
±1 =11	28,546	4,136	16,911	5,213	11,459	239	4,154	3,345	200	* 경기 13명 • 서울 강서구 일가족 관련(11명)
합계	(%)	(14.5)	(59.2)	(18.3)	(40.1)	(0.8)	(14.6)	(11.7)	208	* 서울 8명, 인천 2명, 충남 1명 • 강원 교장연수 프로그램 관련(9명) * 강원 9명
	•						-	-	٠	<del></del>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 누적발생 42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누적 빌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sup>&lt; 인 귀:                                  </sup>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발생자 수 <sup>*</sup>
미국	10,460,365	241,186	193,734	1,142	2.31	3,178.48
인도	8,773,479	129,188	44,684	520	1.47	641.01
브라질	5,781,582	164,281	33,207	908	2.84	2,722.03
러시아	1,903,253	32,834	22,702	391	1.73	1,322.62
프랑스	1,886,286	43,559	23,620	931	2.31	2,879.83
스페인	1,458,591	40,769	21,371	308	2.80	3,143.52
영국	1,317,500	51,304	27,301	376	3.89	1,966.42
아르헨티나	1,284,519	34,782	11,163	251	2.71	2,848.16
콜롬비아	1,174,012	33,491	8,686	179	2.85	2,357.45
이탈리아	1,107,303	44,139	40,902	550	3.99	1,870.44
멕시코	991,835	97,056	5,658	626	9.79	749.69
페루	930,237	35,067	2,231	36	3.77	2,827.47
독일	773,556	12,378	22,461	178	1.60	938.78
남아프리카공화국	746,945	20,153	2,213	77	2.70	1,285.62
이란	738,322	40,582	11,737	461	5.50	891.69
폴란드	665,547	9,499	24,051	419	1.43	1,751.44
칠레	528,030	14,738	1,592	39	2.79	2,819.17
우크라이나	525,176	9,508	12,524	191	1.81	1,199.03
벨기에	524,916	14,106	4	15	2.69	4,525.14
이라크	514,496	11,580	2,690	48	2.25	1,273.50
인도네시아	457,735	15,037	5,444	104	3.29	169.85
체코	454,030	5,926	7,355	171	1.31	4,283.30
네덜란드	436,024	8,347	6,086	53	1.91	2,549.85
방글라데시	428,965	6,159	1,767	19	1.44	265.78
스웨덴**	177,355	6,164	-	-	3.48	1,755.99
카자흐스탄**	159,756	2,306	-	-	1.44	858.90
일본	114,983	1,880	1,685	13	1.64	90.61
중국	86,338	4,634	13	0	5.37	6.08
우즈베키스탄	69,914	596	234	2	0.85	213.15
키르기스스탄	65,953	1,196	499	1	1.81	1,063.76
싱가포르	58,114	28	12	0	0.05	984.98
말레이시아	45,095	304	1,304	1	0.67	138.75
호주	27,703	907	5	0	3.27	110.37
태국	3,861	60	0	0	1.55	5.57
베트남	1,256	35	3	0	2.79	1.29
대한민국	28,546	493	208	1	1.73	55.06

<sup>\*</sup> 국가별 총 인구 수: 유엔인구기금(UNFPA) '19년 기준, 대한민국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sup>\*\*</sup>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및 처분 기준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	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b>마스크 착용</b> <b>의무화</b>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화·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500명 이상 모임·행사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은 실외

<sup>\*</sup> 행정력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 확대

### □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시설 전·후 비교

٦н	ᄌҴ		H7 (44 400) HEL TIO)
구분	종전		변경 (11.13일부터 적용)
	▶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제한시설 12종 시설		<u>▶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23종</u>
	(기 안내*)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ightharpoons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 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150㎡ 이상)
적용 시설			•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 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 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대중교통	$\Rightarrow$	<u>▶ &lt;좌동&gt;</u>
	▶ 집회·시위장	$\Rightarrow$	<u>▶ &lt;좌동&gt;</u>
	▶ 의료기관 <u>,&lt;신설&gt;</u>	$\Rightarrow$	▶ 의료기관 <u>, 약국</u>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qquad \qquad \Box \gt$	▶<좌동>
	▶ <신설>	$\qquad \qquad \Box \gt$	▶ 종교시설
	<u>▶ &lt;신설&gt;</u>	$\Rightarrow$	▶실내 스포츠 경기장
	<u>▶ &lt;신설&gt;</u>	$\Rightarrow$	<u>▶ 고위험 사업장</u> * <u>콜센터</u> , 유통물류센터
	<u>▶ &lt;신설&gt;</u>	$\Rightarrow$	<u>▶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u> 모임·행사

\* 10.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10.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 □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처분 기준 전·후 비교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4에 따른 대상자별 정의
-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 (이용자)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구분	종전		변경 (11.13일부터 적용*)
행정 명령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의 집회· 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 * 운영 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의무 포함		지 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호의2에 의한 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의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조치 ★ 필요시 별도의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가능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	위반 시 <b>제80조(벌칙) 제7호</b> 에 의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사고발 조치 및 입원·치료비,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	$\uparrow$	위반 시  • (관리자운영자) 제83조(과태료) 제2항에 의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 (이용자) 제83조(과태료) 제4항에 의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차) 10만원, (2차 이상) 10만원

\* 단, 마스크 착용 외 다른 방역수칙 위반은 11.7일부터 적용(11.1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참조)









# 마스크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 [2020.11월 안내서 2판 기준]

- 아스크, 이럴 땐 꼭 착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외) <sup>●</sup>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sup>©</sup>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 ☞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많아 감염 차단 필요성이 큰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이럴 땐 착용하지 않아도 돼요!
  - (실내)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실외)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조깅, 공원산책 등)
  - **(기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음식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공연 운동경기 등)

####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가능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마스크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다음을 공통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추가 가능(관할 지자체의 명령 확인)

	== 1=1, === 1:0 00 0E = 11 1 <u>+1 11E 1 1 10 (EE</u> 11 11=1 00 1E)
부과 장소	부과 대상
중점·일반관리시설 ※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b>중점·일반관리시설</b> 의 <b>관리자(운영자)·이용자</b>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b>대중교통의 이용자</b>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b>집회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b>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b>관리자(운영자)·종사자</b>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고위험 사업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sup>\*</sup>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u> </u>	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예외자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b>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b>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음식·음료를 <b>먹거나 마실 때</b>
	• 수영장·목욕탕 등 <b>물속·탕 안에 있을 때</b>
	•세수, 양치 등 <b>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b>
예외 상황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b>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b> • 얼굴을 보여야 하는 <b>공연</b> (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b>방송 출연</b> (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재(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b>수어통역을 할 때</b>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b>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b> (항공기 조종사 등) <b>가 있을 때</b>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Livery by Carona 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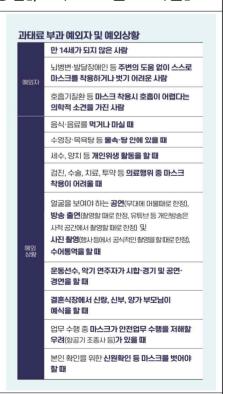


#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리플릿



겉면,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권고 기준」





내지,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식약처)





- ★ KF94 마스크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 ♥ KF80이상 마스크
  - 기침,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sup>()</sup> 과 기저질환자<sup>(2)</sup>가 다른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비밀치단용·수술용 마스크
  -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더운 여름철·호흡이 불편한 경우에 사용이 편리
  - 1 건강취약계층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 2 기저질환자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호흡 용이성 → 호흡 용이성 → 호흡 용이성 → 호흡 용이성









마스크 착용 전 깨끗이 손 씻기



입과 코를 가리고, 틈이 없도록 착용



착용중 마스크 만지지 않기 만진 후 깨끗이 손씻기









#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워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 · 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 · 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 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갂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첚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 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 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 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 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